

「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9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(이하 구미코)가 위치한 ‘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’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,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어 기존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시설용지에서 시행되지 못했던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, 운동 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해짐. 이에 따른 전부개정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명에 관한 사항 정비
- 명칭과 소재지(안 제2조)
- 사업(안 제3조)
- 사용료 감면(안 제5조)
- 사용료 반환(안 제7조)
- 부대·편익시설의 임대(안 제9조)
- [별표] 전시장 및 회의실 등 사용료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, 제84조, 제85조, [별표14]
-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33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2025년 1월, 구미코 부지가 ‘일반공업지역’에서 ‘준공업지역’¹⁾으로, ‘산업시설용지’에서 ‘지원시설용지’²⁾로 변경됨에 따라 확장된 운영의 범위를 뒷받침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제명 및 시설물의 명칭인 ‘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’을 ‘구미컨벤션 센터’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여 다양한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다각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안 제5조 사용료 감면, 안 제7조 사용료 반환, 안 제9조 부대·

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3호

가. 전용공업지역 : 주로 중화학공업,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일반공업지역 :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준공업지역 :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, 주거기능·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

2) 국토교통부,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3조제1호가목

산업시설용지	지원시설용지
▪ 「산업입지법」 제2조제7조의2에 따른 산업시설 ▪ 제조시설용지, 연구시설용지, 물류시설용지 등	▪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▪ 행정·교육·금융·고용·의료 등 공공지원시설, 정보처리·전시·유통 등 생산지원시설, 문화·관광·체육·생활편의·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

편익시설의 임대와 안 제10조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해 구미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전시장 및 회의실 등의 사용료는 타 지역 컨벤션센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와 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.